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246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1. A
	2. B
피 고	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변 론 종 결	2018. 3. 23.
판 결 선 고	2018. 5. 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7. 12. 7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6,968,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가. 원고들은 부부로 2013. 8. 20. 아들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, 103동 2401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임대차보증금 215,000,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.

나. 그러던 중 원고부부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15,000,000원에 매수하고 2017. 12. 1. 원고 부부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는데, 대금지급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215,000,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, 2017. 10. 19. C에게 100,000,000원을 송금하고, 2017. 12. 1.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C의 국민은행 채무 200,000,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.

다. 원고 부부는 2017. 12. 1. 피고에게 취득가액 515,000,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,150,000원, 지방교육세 515,000원 합계 5,665,000원을 신고 · 납부하였다.

라. 피고는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215,000,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정당세액 12,312,000원 중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,190,000원, 지방교육세 457,000원, 가산금 321,460원 총 6,968,460원을 신고 ·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, 이에 원고 부부는 2017. 12. 7. 위 금원을 추가로 신고 · 납부(이하 '이 사건 신고납부'라 한다) 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들의 주장

피고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190,000,000원만 유상취득으로 인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하고, 나머지 324,000,000원을 증여로 보아 2017. 12. 7.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원고 부부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,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그러나 이 사건 신고납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4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,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,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법'이라 한다)은 "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"고 규정하였으나, 위 조항은 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조항도 적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신고납부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.

나. 구 지방세법은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, 구 지방세기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) 제51조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 부부는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를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 그러나 원고 부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바가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

5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병준

판사 안희경

판사 조연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관계 법률

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
제72조(청구대상) ①이 법에 의한 처분(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구 지방세기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)
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(「지방세법」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)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2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(「지방세법」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8

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끝.